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등 규정 신설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58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등 규정 신설	3

I. 제안경위

2025년 7월 9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근로복지 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운영·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법 시행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등 규정 신설(안 제28조제5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28조제5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 ④ (생략) <신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이용 등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8조제1항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30조²⁾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 ~ 2014년까지 국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시설(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³⁾하였고,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의 경우 조례를 통하여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은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

-
- 1)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 3) '92~'04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건축비의 최대 50%)하였으나, '03년 복지관 건립·운영사무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05~'14년에는 고용부의 건립계획 평가 후 행정안전부가 예산 교부
 - 4) 2025년 5월 기준 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과 관련하여는 참고(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복지시설) 운영현황) 참조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의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근로복지시설은 현재 자치사무인바, 개정안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거 감사원 지적⁵⁾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의무화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편중으로 근로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의 근로복지시설 입주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

5) ('20.3월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일반근로자의 복지증진보다는 특정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실, 체력단련장 등 일반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로 이용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 이에 따라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그간 면제하던 시설 이용료를 부과

참고

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복지시설) 운영현황 (2025.5.기준)

권역	실제 명칭 (명칭)	세부시설 운영현황					노동조합 입주현황		운영주체
		교육 시설	체육 문화 시설	상담 시설	생활 편의 시설	취업 지원 시설	한노/ 민노 지역 대표 기구	그 외 노동 조합	
수도권	백학일반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	○	○						연천군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		한국노총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		○	○		○		한국노총
	경기 종합노동복지회관	○	○	○	○		○	○	한국노총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		○		○	○		한국노총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	한국노총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	한국노총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		한국노총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포천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한국노총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	○	○					한국노총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		한국노총
	평택장당 노동자복지회관	○	○	○	○		○		민주노총
강원권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춘천도시공사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	○	○	○	○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		한국노총
	원주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문막공단 근로자복지관				○				문막공단 운영협의회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	○			○		한국노총

권역	실제 명칭 (명칭)	세부시설 운영현황					노동조합 입주현황		운영주체
		교육 시설	체육 문화 시설	상담 시설	생활의 편의 시설	취업 지원 시설	한노/ 민노 지역 표기	그 외 노동 조합	
경북권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한국노총
	포항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포항시
	포항덕업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포항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		구미도시공사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칠곡군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	○	○					한국노총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한국노총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해피복지서 비스센터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	○	○		○	○		한국노총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	○	○		○	○		한국노총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	○						고령2일반 산업단지공단
경남권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		○		○	○	○	한국노총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한국노총
	창원시노동복지회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	○		○	○	민주노총
	창원시노동복지회관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	○	○	○		○		한국노총
	창원시 진해종합복지관	○	○	○	○		○		천주교마산교 구 사회복지회
	창원시노동복지관 (한국노총마산지부)	○		○	○		○		한국노총
	창원근로자복지타운	○	○	○	○	○			한국산업단지 공단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	○	○	○				울산시설공단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	○	○	○		○		한국노총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	○		○	○			(사)진주YMCA

권역	실제 명칭 (명칭)	세부시설 운영현황					노동조합 입주현황		운영주체
		교육 시설	체육 문화 시설	상담 시설	생활 편의 시설	취업 지원 시설	한노/민노 지역대 표기구	그 외 노동 조합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한국노총
	거제시노동복지회관	○	○		○	○	○		민주노총
전북권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한국노총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완주군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완주군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정읍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전남권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		○		○	○		순천시
	광주하남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하남산업단 지 관리공단
	완도군 근로자종합복지관	○	○						(사)장보고 아카데미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민주노총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한국노총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한국노총
충북권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				○		한국노총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	○	○	○	○			진천군
	청주북대 근로자종합복지관	○	○						청주YMCA
	음성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	○		○				음성군수영연맹
충남권	대전둔산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	○	○	한국노총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	○	○	○	○	○	민주노총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						한국폴리텍대학 신학협력단
	공주시 검상 근로자복지관	○	○			○			공주시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			○	○	○		한국노총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		○		○	○		한국노총

권역	실제 명칭 (명칭)	세부시설 운영현황					노동조합 입주현황		운영주체
		교육 시설	체육 문화 시설	상담 시설	생활 편의 시설	취업 지원 시설	한노/ 민노 지역 대표 기구	그 외 노동 조합	
	서산시종합사회복지 관 대산분관	○	○				○		서산시
	당진 근로자종합복지관	○	○		○		○		당진시